

사건번호 '2024헌나8'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 재판" 법리 검토 TF 구성...오늘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 정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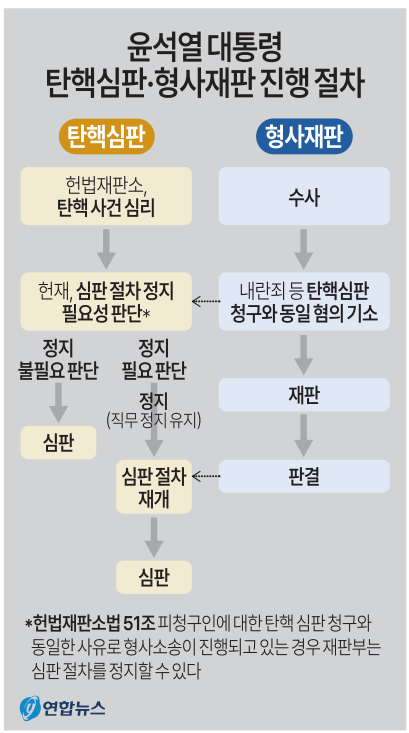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 처리 일정

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정정대 중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 탄핵소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 탄핵의결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탄핵심판 결정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심리 착수** 헌재, 주심재판관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 착수
- 전원재판부 회부** 지정재판부(3명) 사전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9명) 회부
- 변론 준비기일** 당사자와 관계인이 증거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 결정
- 소환·변론**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
- 당사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 다시 정해 재소환
- 재소환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리 가능
피청구인(대통령)을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신문
- 재판 평의** 재판관들이 청구 건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
- 결정문 작성**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 작성
- 선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인용(탄핵결정)**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는 심판청구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소환요구 불응”

검찰, 오늘 2차 소환 통보 방침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9인 재판부 복귀 전망

6인으로 심리 가능...결정도 이론상 가능하나 정당성 논란 소지 여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추천...후임 재판관 임명 서두를 듯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거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헌재법 2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6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중단 없이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관 9인으로 탄핵심판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헌재 9인 체제로 복귀를 위한 재판관 임명 절차가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뿐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현황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18기	26기	19기	25기	17기	24기		
2025년 4월	2025년 4월	2029년 4월	2029년 4월	2030년 9월	2030년 9월		
지명주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영수 대법원장	김영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성향분류	진보	진보	중도·보수	중도·보수	중도·보수	중도·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심판
27기	29기	18기	가결 시 대통령 직무 정지	
지명주체	국회(민주당)	국회(민주당)	국회(국민의힘)	
성향분류	진보	진보	중도·보수	

* 12월 9일 국회 임명동의안 접수, 12월 중순 인사청문회 개최 및 12월 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자료: 헌법재판소

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사실상 형식이 가까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여야, 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

국회추천 3인 인사청문특위 구성...24일 전 청문회 마무리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면서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날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정특위 위원장, 극구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민병덕·김기표·김남희·박희승·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